

검 토 보 고 서

충청북도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
일부개정조례안



건설환경소방위원회
수석전문위원 김홍식

충청북도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검 토 보 고 서

1. 발의자 : 김 호 경 의원 등 7인

2. 발의 및 회부일자

가. 발의일자 : 2022년 9월 30일

나. 회부일자 : 2022년 10월 4일

3. 제안이유

「병역명문가 신청 및 표창 운영 규정」 개정에 따른 사항을 반영하여 조례에서 사용하는 “병역명문가” 등의 개념을 명확히 하고, 그 밖의 조문을 정비하여 도민이 이해하기 쉽도록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.

4. 주요내용

가. “병역명문가”, “병역명문가 가족” 의 뜻 반영(안 제2조)

나. 기타 “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” 에 따른 조문 정비 등
(안 제4조, 제6조)

5. 검토내용

가. 조례개정의 필요성

- 개정안은 관련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용어의 정의가 변경된 사항을 반영하여 뜻을 명확히 하고, 그 밖에 “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” 에 따라 일부 조문의 용어를 알기 쉽게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됨.

나. 조례내용의 정당성 및 법 적합성

- 개정안은 병무청 훈령인 「병역명문가 선정 및 표창 운영 규정」의 개정으로 “병역명문가” 및 “병역명문가 가족”의 정의가 변경된 것을 반영하고, 그 밖에 “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”에 따라 일부 조문의 용어를 알기 쉽게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내용의 정당성이 인정됨.
 - 조문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,
 - 제2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개정함.
 1. “병역명문가”란 3대(1대부터 3대까지의 직계비속 남성)가 모두 현역복무 등을 성실히 마쳐 「병역명문가 선정 및 표창 운영 규정」 제2조의2제1항에 해당하는 가문(4대째의 직계비속 남성 모두가 현역복무 등을 마친 경우 포함)을 말한다. 다만, 3대째 가족 중 남성이 없고 군 의무복무기간을 마친 여성이 있는 가문의 경우를 포함한다.
 - 제2조제3호 중 “모”를 “부모”로 명시함.
 - 제4조제2항 중 “범위 안”을 “범위”로, “관하여 필요한”을 “필요한”으로 정비함.
 - 제6조 중 “관하여 필요한”을 “필요한”으로 정비함.
 - 기타 조문은 상위법령에 위반되거나 저촉되는 사항은 없음.
 - 관련 부서: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검토한 결과 **“특이사항 없음”**
 - 입법예고(‘22.10. 4.~‘22.10.11.)를 통해 도민 의견을 수렴하였음.
- 다. 조례내용의 기술적인 사항
- 조문의 표현은 조문 상호 간에 상충되는 내용은 없으며, ‘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’에 맞추어 간결하고 알기 쉽게 표현하였음.

6. 검토의견

- 「충청북도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」 일부개정조례안을 검토한 결과, 개정안은 관련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용어의 정의가 변경된 사항

을 반영하여 뜻을 명확히 하고, 그 밖에 “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”에 따라 일부 조문의 용어를 알기 쉽게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됨.